

『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8일

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용 학

나. 제안이유

-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선정마을 지역개발(인센티브)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어 기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,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주민지원기금 이자는 구미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징수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구 춘 서

○ 본 『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』은

- 2013. 9월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인 옥성면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하여 제정·시행된 조례로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